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인 사 혁 신 처 장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306명)	시험과목		주요 근무예정부처(예시)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	
5급 (행정)	행정직(일반행정)	전국 : 102명 지역구분 : 39명 *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한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민법(분야별 제외), 경제학원론, 조세정책론, 재정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전 부처
	행정직(인사조직)	2명	"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	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법무행정)	5명	"	필수(4) : 행정법, 민법(분야별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 :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재경)	60명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국제통상)	10명	"	필수(4) :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선택(1) :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도시, 교통, 정보통신, 환경, 농수산해양,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외교관후보자 포함),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교육행정)	6명	"	필수(4)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부
	사회복지직(사회복지)	3명	"	필수(4) :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인류학, 사회통계, 사회정책, 행정학	보건복지부
	교정직(교정)	3명	"	필수(4)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법무부
	보호직(보호)	2명	"	필수(4) :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선택(1) :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검찰직(검찰)	2명	"	필수(4)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 :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 일부(분야별 제외), 회계학, 영어학	검찰청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1명	"	필수(4) : 형사소송법, 국제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3과목 이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법무부
5급 (기술)	공업직(일반기계)	10명	"	필수(3) : 기계공학개론, 기계설계, 재료역학 선택(1) :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전기)	9명	"	필수(3)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1) :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공업직(화공)	8명	"	필수(3)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1) :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농업직(일반농업)	전국 : 2명, 지역구분 : 1명 *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	필수(3) : 재배학, 식물자원학, 농업생명학 선택(1) : 토양학, 식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수요부처
	임업직(산림자원)	2명	"	필수(3) : 조림학, 임업생명학, 산림정책학 선택(1) : 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 임업경제학	산림청
	해양수산직(일반수산)	전국 : 2명, 지역구분 : 1명 *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	필수(3) :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선택(1) : 수산자원학, 수산업각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환경직(일반환경)	전국 : 5명, 지역구분 : 1명 *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	필수(3) :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1) :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수질및폐기물	환경부, 그 밖의 수요부처
	기상직(기상)	2명	"	필수(3) : 기상예측 및 관측, 역기상학, 물리기상학 선택(1) : 기상측기 및 관측, 위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천기공학, 수치예보	기상청
	시설직(일반토목)	전국 : 12명, 지역구분 : 2명 *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	필수(3) :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 :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건축)	전국 : 4명, 지역구분 : 1명 * 지역별 구분모집 참조	"	필수(3)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선택(1) :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법규, 철근콘크리트공학, 토질및기초	
	시설직(시설조경)	1명	"	필수(3) : 조경설계 및 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선택(1) :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계획 및 시공,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문화재청, 그 밖의 수요부처
	방재안전직(방재안전)	1명	"	필수(3)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선택(1) : 수리수문학, 재료역학, 건축구조학, 전기기초학, 화공열역학, 환경생태학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전산직(전산개발)	11명	"	필수(3)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 :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전 부처
	전산직(데이터)	4명	"	필수(3) : 정보보호론, 암호이론, 데이터베이스론 선택(1) : 통계, 정보관리	
	전산직(정보보호)	1명	"	필수(3) :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선택(1) :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저장구조론	
	방송통신직(방송기술)	10명	"	필수(3) :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정지궤도 선택(1) :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정원다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구분	선발분야	선발예정인원 (총 45명)	시험과목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	
			필 수	선택과목	전공평가	통합논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 반 외 교	45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국제경제학, 국제법, 정책학	학제통합논술시험 I, 학제통합논술시험 II

* 제1차시험의 합격자수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하며, (예)차시험 합격선 점수 시 만점자도 점수는 참신하지 않음)
* 지역인재 : 지방대학 육성·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는 제도
* 의사·조리사 면허증은 다른 필수과목 면제의 50%입니다. * 방위전직 적용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됩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2025년도부터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며, 인사조직 직류에서는 행정법과 인사·조직론이 행정법으로 통합됩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2025년도부터 학제통합논술시험 I과 학제통합논술시험II가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됩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경쟁)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가능)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제한기일 직장확인기 바이며, 제한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향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직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5	7	3	2	2	1	1	1	-	2	-	1	1	1	1	1	1	-
행정직(일반행정)	19	5	2	1	1	1	1	1	-	1	-	1	1	1	1	1	1	-
농업직(일반농업)	1	-	-	-	-	-	-	-	-	1	-	-	-	-	-	-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1	-	1	-	-	-	-	-	-	-	-	-	-	-	-	-	-	-
환경직(일반환경)	1	-	-	-	1	-	-	-	-	-	-	-	-	-	-	-	-	-
시설직(일반토목)	2	1	-	1	-	-	-	-	-	-	-	-	-	-	-	-	-	-
시설직(건축)	1	1	-	-	-	-	-	-	-	-	-	-	-	-	-	-	-	-

2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외무공무원법」 제9조,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산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무로 죽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징계로써 파면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연금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법원의 당선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지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비례면직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경찰청법」 제50조제3항(경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2024년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단, 교정 및 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 유지)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9급
정보처리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시큐리티응용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인정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7급 제1차시험, 9급 제1·2차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금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봅니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휴업하여폴간 중에일이 제출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 군복무(병역, 대체복무) 또는 교원하셨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해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지원대상자)으로 일했던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재출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서류시행 및 출입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근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분·무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인지만 근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근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주 관계 서·군·구청에 본인 또는 주민등록증 제출(주민번호 앞자리 생략) 등 공개채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에 명시된 수급대한부모가족)종별에는 주민등록상의 가주지 관할 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인사지침」(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민사정책과(044-201-8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3.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만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만,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제출기간	취소기간(추가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급(행정)	1.28. 09:00~1.30. 21:00	1.28. 09:00~2.2. 18:00 (2.20. 09:00~2.22. 18:00)	제1차시험	2.24.	3. 4.	4. 6.
			제2차시험	4. 6.	6.24.~6.29.	9.18.
			제3차시험	9.18.	10.10.~10.12.	10.24.
5급(기술)			제1차시험	2.24.	3. 4.	4. 6.
			제2차시험	4. 6.	6.30.~7. 5.	9.18.
			제3차시험	9.18.	10.10.~10.12.	10.24.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2.24.	3. 4.	4. 6.
			제2차시험	4. 6.	6.24.~6.29.	9.18.
			제3차시험	9.18.	10.13.	10.24.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사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무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사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장소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제출방법 및 제출시간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사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7급) 2023.5.25.(목) 09:00~5.25.(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9급) 2023.2.9.(목) 09:00~2.11.(토)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제출(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료(율)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을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제출 시 유의사항
* 원서제출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사이버국가고사센터(www.gosi.kr)에 게시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절차문제지는 2020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2020.9.10.))」에 따라 제공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의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 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18.5.12. 전 시험)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5급(행정·기술)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90	97	870	800	452	88(level 2)	800

※ 청각장애인 점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문(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729호)」 참고]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18.5.12. 전 시험) 375점, TEPS(18.5.12. 이후 시험)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18.5.12. 전 시험) 476점, TEPS(18.5.12. 이후 시험) 271점, TOEFL(PBT) 392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8.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8.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격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험기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만료하는 기간에 시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을 통해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책(정기시행 성적만을 인정하고, 월단기·분기·특수목적 등)에 따라 승인·접수·일자·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버관급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3.2.7.(월)~3.3.(금)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2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기존 5년)이 폐지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3.2.27.(월)~3.3.(금)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스넬트 (SNULT)	플렉스 (FLEX)	독일어능력시험 (Test DAF)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스넬트 (SNULT)	플렉스 (FLEX)	델프/달프 (DELF/DALF)	스넬트 (SNULT)	플렉스 (FLEX)	토르플 (TORFL)	스넬트 (SNULT)	플렉스 (FLEX)	한어수평고시 (신HSK)	스넬트 (SNULT)	플렉스 (FLEX)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어능력시험 (JLPT)	스넬트 (SNULT)	플렉스 (FLEX)	델레 (DELE)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60점	750점	수준 3	GZ B2	60점	750점	DELF B2	60점	750점	1단계	60점	750점	5급 210점	60점	750점	740점	N2 150점	60점	750점	B2

※ 청각장애인 점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문(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729호)」 참고]
- SNULT 30점, FLEX 450점

※ 신HSK의 경우 IBT(인터넷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8.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외국어에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정확한인이 어려운 분야에서 원어민에 준하는 수준의 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 다만, 자격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험기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만료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을 통해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책(정기시행 성적만을 인정하고, 월단기·분기·특수목적 등)에 따라 승인·접수·일자·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버관급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3.2.27.(월)~3.3.(금)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9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9급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분에는 제외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계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지방인재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 인원제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적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정도이다. * 제출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중복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제1차시험 면제자 포함)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맞추어 그간 대부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면제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제1차시험 면제자 중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제2차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민사정책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